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 재 완*

-
- I. 서 론
 - II. FTA 원산지의 검증대상 및 검증방식
 - III. FTA 원산지검증현황과 검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 IV.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특성과 효율화 방안
 - V. 결 론
-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

I. 서 론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국제무역을 규율하고 있지만 WTO가 출범할 당시 91개에 불과했던 지역경제통합체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RTAs)는 2012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것이 511개이고, 이 가운데 발효된 것이 319개에 달하게 되었다.¹⁾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제무역질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²⁾ FTA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총 8개의 FTA가 발효중이며,³⁾ 마지막 남은 거대경제권 중국과의 FTA협상도 진행중이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역내 국가 또는 경제통합체간에만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므로 FTA 당사국간 상품 무역의 교역과 관련해 해당 상품이 관세부과에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역내국가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역내국가산이 아닐 경우 특혜부여를 배제하는 FTA의 이행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FTA 이행관리는 통상 ‘원산지 검증’이라는 행정업무로 협정체결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 FTA 원산지검증업무가 시작된 것은 사실상 2006년부터인데,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이와 관련한 업무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정한 FTA 이행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무역에서 FTA의 원산지검증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는 특혜관세 적용뿐 아니라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어느 경우나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FTA 원산지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Estevadeordal & Souminen(2004, 2008), Bhagwati(2008), Kumar(2007), Baldwin(2006), De Melo J. & A. Portugal-Perez(2006), Resellon, P. L.(2000), Estevadeordal(2000) 등 전체적으로 약 40여편의 논문이 확인된다. 국내에서도 상당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김세영·조국형(2012), 정순태(2012), 전준수·조준영(2012), 이영수·권순국(2011), 김석오·정재완(2010), 남풍우(2010) 등 약 30여편이 확인된다. 이들 선행연구의 주제는 다양하나 원산지검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와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에 규정

1)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참조. 2012.7.4.방문.

2)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2003), p.8

3) 한-터키 및 한-콜롬비아 FTA는 협상이 타결되었고,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된 원산지 검증의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원산지 검증 현황을 분석하여 원산지검증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원산지 검증업무의 특성을 감안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FTA 원산지의 검증대상 및 검증방식

1. FTA 특혜관세 적용과 원산지검증 대상

FTA에 의한 상품무역에서 특혜부여 방법은 협정국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상의 특혜다. 이때의 인하대상인 관세는 기본관세율이 원칙이지만 WTO 협정에 따라 다자간 양허에 의해 기본관세율이 인하되어 있을 경우 그 다자간 양허관세율 보다 단계적으로 더 낮게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것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TA 당사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과 함께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⁴⁾ 하지만 무역규모가 증가하면서 각국은 통관단계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포함한 각종 통관의 법적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를 수리(受理)하고 통관을 허용한 다음 사후심사를 통해 FTA 특혜관세를 포함하여 적법성 여부를 가린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⁵⁾ FTA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는 FTA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 또는 일정한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한 가공공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실질적변형기준, 그리고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변형기준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보충기준의 세 가지를 일반기준으로 둔다. 또 이와 별개로 HS 품목별로 품목별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두어⁶⁾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이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참조.

5) 관세법 제38조 및 제248조 참조.

모두 충족될 경우 원산지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모든 수입물품이 검증 대상이다.

2. FTA 원산지의 검증방식

FTA에 규정되는 원산지의 검증(verification)⁷⁾ 방식은 직접검증, 간접검증,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이란 3가지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나 동일하다. 직접검증이란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이 정당한 것인지를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간접검증은 이러한 확인업무를 해당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이 확인한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때 검증결과의 회신에는 시한이 있게 된다. 혼합 형태는 간접검증 방법을 적용하되 필요시 수입국세관의 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⁸⁾로 하거나,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⁹⁾, 그리고 간접검증 방식으로 하되 검증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검증을 실시하는 방법¹⁰⁾으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FTA 원산지의 검증은 필연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과 수출국 세관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FTA가 초래하는 관세행정 환경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의 원산지검증방식과 간접검증에서의 회신 시한은 <표 1>과 같다.

6) FTA에 따라서는 품목별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로서 중국이 아세안 및 파키스탄과 체결한 FTA를 보면 품목별기준을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 40%)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7) 한-미 FTA 제6.18조 및 한-EU FTA 제6.27조 참조.

8)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및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 참조.

9) 한-미 FTA 제4.3조 및 제6.18조 참조. 한-미 FTA에서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방법을 병행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10)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의 제15조.

〈표 1〉 FTA의 원산지검증 방식과 간접검증시의 회신시한

| 검증방식 | 해당되는 FTA | 회신 시한 |
|------|--|---------|
| 직접검증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섬유 및 의류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만 직접검증, 기타 품목은 직접검증), 한-아세안(간접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만 직접검증) | - |
| 간접검증 | 한-아세안 | 2월 이내 |
| | 한-인도 | 3월 이내 |
| | 한-페루 | 150일 이내 |
| | 한-EFTA, 한-EU | 10개월 이내 |
| | 한-미(섬유 및 의류만 해당) | 12개월 이내 |

자료 :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1〉에서 직접검증의 장점은 수입국세관이 검증을 주도함으로써 검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검증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현지국 업체 등에 대한 정보입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 업체를 검증하기가 어렵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간접검증은 검증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 업체에 대해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출국 세관에 검증을 의존하기 때문에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출국 세관이 제한된 시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수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도 있다.¹¹⁾

Ⅲ. FTA 원산지검증현황과 검증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FTA 원산지 검증현황

11) 한편, 직접검증은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간접검증에는 이와 같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본격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다.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은 <표 2>와 같다.¹²⁾

<표 2> FTA 원산지검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계 |
|------|---------|------|------|------|------|------|------|-------|
| 수입물품 | 요청건수 | - | 7 | 16 | 27 | 23 | 20 | 93 |
| | 대상업체수 | - | 12 | 26 | 43 | 45 | 44 | 170 |
| | C/O건수 | - | 98 | 293 | 245 | 735 | 921 | 2,292 |
| | 금액(백만불) | - | / | / | / | 73 | 153 | 226 |
| 수출물품 | 요청건수 | 1 | 6 | 7 | 7 | 8 | 90 | 119 |
| | 대상업체수 | 1 | 6 | 7 | 7 | 15 | 93 | 129 |
| | C/O건수 | 1 | 8 | 23 | 41 | 89 | 172 | 334 |
| | 금액(백만불) | / | / | / | / | 5 | 51 | 56 |

자료 : 관세청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표 2>를 보면 그동안 전반적으로는 원산지검증이 우리나라 세관이 수출국 세관 쪽에 검증을 의뢰하는 수입물품의 검증이 중심이 되었으나, 2010년부터 외국세관 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한 ‘수출물품 검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들어 검증요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¹³⁾ 이는 주로 한-EFTA 및 한-EU FTA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2) <표 2>는 간접검증 현황으로, 직접검증은 수입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실시한 경우가 모두 합쳐 10여건 내외에 불과하고, 외국 세관당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검증을 실시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EU 등 외국의 검증요청은 2012년 들어서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검증결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해 검증결과 그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이미 적용된 관세특혜를 배제하고 특혜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¹⁴⁾ 수입물품에 대한 최근 4년간 FTA원산지 검증결과에 따라 관세 특혜가 배제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FTA 원산지검증결과에 따른 관세특혜의 배제현황

(금액 : 백만원)

| 구 분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한-칠레 | 51 | 172 | 6 | 36 | - | - | 1 | 8 |
| 한-싱가포르 | 184 | 533 | 3 | 8 | 6 | 7 | - | - |
| 한-EFTA | 418 | 7,359 | 251 | 11,893 | 56 | 627 | 129 | 1,613 |
| 한-아세안 | 318 | 707 | 347 | 2,824 | 125 | 1,338 | 206 | 12,380 |
| 한-인도 | - | - | - | - | 1 | 2 | 58 | 344 |
| 한-EU | - | - | - | - | - | - | 14 | 350 |
| 계 | 971 | 8,806 | 607 | 14,762 | 188 | 1,974 | 408 | 14,695 |

자료 : 관세청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표 3>을 보면 한-칠레와 한-싱가포르 FTA가 적용된 수입물품의 경우 2009년 이후 관세특혜가 배제된 경우가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나 한-EFTA와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아직 계속하여 상당규모로 관세특혜가 배제되고 있다. 살펴보면 원산지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특혜관세 배제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증으로 인한 관세특혜의 배제는 관세당국이 얼마만큼 검증을 수행하느냐 하는 정책의지와도 관련된 것이나 <표 3>을 보면 FTA가 확대에 따라 해가 갈수록 검증에 따른 추징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원산지요건의 미충족은 교역상대국의 경제발전 정도와는 관계가 적

14) 이때는 특혜관세에 상당하는 금액뿐 아니라 관세법 제42조에 의한 가산세도 추가하여 부과된다.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참조.

으나 FTA가 발효된 다음 시간이 갈수록 원산지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관세상 특혜배제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혜관세가 배제된 이유가 원산지요건 가운데 어떤 것이 미충족되었기 때문인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특혜관세가 배제된 원산지요건 미충족 사유

| 구 분 | | 총 계 | 원산지 인정 | 원산지 불인정 | | | |
|----------|-------|-------|--------|---------|--------|-----------|------|
| | | | | 기준 미충족 | C/O 위반 | 회신기간 경과 등 | 소 계 |
| 수입 물품 | C/O건수 | 1,040 | 197 | 166 | 135 | 542 | 843 |
| | 비중(%) | 100 | 18.9 | 16.0 | 13.0 | 52.1 | 81.1 |
| 수출 물품 | C/O건수 | 247 | 161 | 8 | 76 | 2 | 86 |
| | 비중(%) | 100 | 65.0 | 3.3 | 31.0 | 0.8 | 35.1 |

자료 : 관세청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

<표 4>를 보면 특혜관세가 배제된 것은 수출이 35.1%이고 수입이 81.1%에 달한다. 원산지가 불인정된 사유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회신기간 경과 등¹⁵⁾ 기타 사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해 수출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가 31%에 달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즉,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준인 것이다. 반면 원산지기준을 미충족한 경우는 아직 수출물품의 경우 검증대상의 3.3%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직접검증이 늘어나면 원산지기준 미충족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원산지검증 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의 원산지관련 규정들과 FTA 관세특례법, 그리

15) 회신기간의 경과는 수출국 세관당국의 업무해태와 같은 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외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FTA 관세특례법이 FTA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동법 제3조) 이 법엔 회신기한이 경과하면 예외없이 관세상의 특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EU나 EFTA 국가에서는 판례로 귀책의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고 <표 2> 내지 <표 4>의 통계 등에 나타난 바를 통해 추출되는 현시점의 FTA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과도한 검증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한 FTA의 원산지규정이 FTA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이다(김세영·조국형, 2012 등). 이는 기업의 FTA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이기도 하나 정부에게는 검증 필요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을 HS 제21류(각종 조제식료품)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복잡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규정사례 : 조제식료품(HS 21류)

| FTA체결대상국 | 칠레 | 싱가폴 | EFTA | EU | 아세안 | 미국 | 인도 | 페루 |
|----------------|----|-----|------|----|-----|----|----|----|
| CC | - | - | - | - | - | 14 | - | 2 |
| CC+가공+MC 30% | - | - | - | 1 | - | - | - | - |
| CC or RVC 55% | - | - | - | - | - | - | - | 2 |
| CTH | 16 | 4 | 8 | 10 | - | 1 | - | 5 |
| CTH+가공 | - | - | - | 3 | - | 1 | - | 2 |
| CTH+가공+MC 30% | - | - | - | 2 | - | - | - | - |
| CTH+MC 45% | - | - | 6 | - | - | - | - | - |
| CTH+MC 40% | - | - | 2 | - | - | - | - | - |
| CTH+RVC 45% | - | 10 | - | - | - | - | - | - |
| CTH or RVC 50% | - | - | - | - | - | - | - | 4 |
| CTH or RVC 45% | - | - | - | - | - | - | - | 1 |
| CTH or RVC 40% | - | - | - | - | 15 | - | 15 | - |
| RVC 55% | - | 2 | - | - | - | - | - | - |
| CTSH+가공 | - | - | - | - | 1 | - | - | - |
| CTSH+RVC 35% | - | - | - | - | - | - | 1 | - |
| 계(총 품목수)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자료 : 8개 FTA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

〈표 5〉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원산지규정을 파악한 것으로¹⁶⁾, HS 제21류의 조제식료품에만 무려 15개의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복합기준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기준의 복잡성은 HS 21류 품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 품목에서도 마찬가지다. 검증이란 측면에서 보면 FTA 특혜가 부여된 조제식료품이 수입될 때는 이러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의 귀책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FTA 원산지의 간접검증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의 검증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으로 통보해야 한다. 각 FTA에는 이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해야 할 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일 그 시한 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부실한 검증으로 원산지가 올바로 인정되지 아닐 경우 현행법상 그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수입자가 질 수밖에 없다.¹⁷⁾ 특히 한-EU나 한-EFTA FTA에는 회신시한이 경과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¹⁸⁾, 어떤 경우가 여기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FTA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FTA관세특례법’에는 회신기한이 경과할 경우 예외없이 특혜관세를 배제하여 비록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의 귀책이 명백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선의의 수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사전심사결과를 믿고 그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하였으나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그 원산지가 부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행정당국의 귀책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의해 납세자가 보호받으나¹⁹⁾ FTA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16) 〈표 5〉에서 CC(Change of Chapter)는 2단위, CTH(Change of Tariff Heading)는 4단위,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각각 의미하며 RVC(Regional Value Contents)는 역내부가가치기준(공제법)을, MC(Import Contents)는 역외재료가치상한법을 의미한다.

17) 이와 같은 경우 무역계약에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결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회피될 수 있다.

18)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참조

수입자(납세자)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FTA 검증관련 규정의 투명성 문제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과 수출국 각각의 세관당국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한-EU 및 한-미 FTA를 표본으로 원산지검증 과정과 수행형태를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FTA 원산지검증 과정과 수행 형태(한·EU, 한-미 FTA의 경우)

| 검증과정 | 검 증 대 상 | 검 증 장 소 | 검증을 수행하는 형태와 법적근거 |
|---|---------|---------|---|
| 우리 관세당국이 검증결정 | 수 입 물 품 | 국 내 |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자율적 수행(관세법 및 FTA관세특례법) |
|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결정 | 수 출 물 품 | 협 정 상대국 |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자율적 수행(협정 상대국의 관세법) |
|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결정→검증요청(한-EU는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참관 가능) ²⁰⁾ | 수 출 물 품 | 국 내 |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자율적 수행(한-EU FTA 제27조제4항, 한-미 FTA 제4.3조) |
| 우리 관세당국이 검증결정 → 검증요청(한-EU는 우리 관세당국의 검증참관 가능) | 수 입 물 품 | 협 정 상대국 |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자율적 수행(한-EU FTA 제27조제4항, 한-미 FTA 제4.3조) |
|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결정 → 국내에서 직접검증 | 수 출 물 품 | 국 내 |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직접 수행하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지원(한-미 FTA 제4.3조, 제6.19조) |
| 우리 관세당국이 검증결정 → 협정상대국에서 직접검증 | 수 입 물 품 | 협 정 상대국 |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직접 수행하고,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지원(한-미 FTA 제4.3조, 제6.19조) |

자료 : 한-EU FTA 및 한-미 FTA를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산지검증은 자국의 세관당국에 의해 수행될

19) 관세법 제5조 내지 제7조 참조.

20) 참관은 한-EU FTA의 세관분야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에 의해 가능하다.

수도 있으나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체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검증이 수행될 것인가는 검증의 관계당사자인 양국의 관세당국과 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정부측면에서는 검증비용의 부담, 검증허락의 범위, 협력과 지원의 범위 등과 관련해서 그러하고, 업체에서는 검증에 효과적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규범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그 규범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무역을 보다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²¹⁾ 그러나 한-EU나 한-미 FTA모두 검증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직접검증 또는 참관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상호주의적 검증행정문제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검증은 간접검증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검증의 경우에도 수출국 세관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은 불가피하게 수출국 관세당국의 부담을 초래하므로 FTA 협정국과는 검증대상 업체나 건수 등을 상호 유사한 수나 비율로 유지해 나가는 상호주의적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 2>를 보면 2010년까지는 주로 수입물품에 대해, 그리고 2011년부터는 수출물품에 대해 주로 검증이 이루어져 각각 불균형을 보였다.²²⁾ 이와 같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급증하는 협정상대국의 검증요청을 수행함에 따라 정작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의 부실은 불법적인 특혜관세의 적용으로 인한 재정수입감소 및 산업피해와 같은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1) 투명성확보는 WTO GATT의 기본원칙의 하나이고,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Kyoto 협약)이 추구하는 명시적 목표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2006년 3월 우리나라에서 정식 조약으로 발효되었으며, 2012년 6월 현재 세계 174개국이 회원국이다.

22) 검증은 업체별로 실시되므로 업무량 발생이나 수출국 세관당국의 부담측면에서 볼 때 검증대상인 C/O건수 보다는 업체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IV.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특성과 효율화 방안

1. FTA 원산지검증업무의 특성

관세행정에서 세액 및 통관적법성 요건의 심사(審査)는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 규율을 위한 핵심과정이자 난이도가 높고, 또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원산지검증업무도 심사업무의 일부인 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및 관세법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여 이 업무의 주요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FTA 원산지검증업무의 주요 특성

| 구 분 | 주요 특성 |
|-----------------------------------|---|
| 행정의 주요 대상 (가) | ① 전통적 관세행정 대상인 국내 무역업체, 생산업체 및 통관업자 ② 협정상대국의 생산업체, 수출업체 ③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 |
|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나) | ① 전통적 관세행정, 특히 심사에서 요구되는 관세법, 무역실무, 회계, 상품학과 HS분류, 관세평가 등의 지식전반 ② FTA별로 복잡하게 규정된 원산지규정 및 관세법의 특례사항 ③ 능숙한 외국어(특히 영어) 구사능력 |
| 업무수행 형태 (다) | ① 전통적인 관세심사업무(서면심사 또는 현장 방문조사) ② FTA 이행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국내기관과 협력 ③ 국내에서 협정상대국 관세당국 직원과 공동 수행 ④ 협정상대국에서 직접, 또는 현지 관세당국 직원과 공동 수행 |
| 검증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파급 효과 (라) | ① 전통적 관세행정 처분의 파급효과 ② FTA 활용도에 영향(무역 및 FTA 정책에 영향) ③ 협정상대국의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 관세당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통상마찰까지 비화할 가능성 |

자료 : 관련법령, FTA, 검증업무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

<표 7>을 보면 FTA 원산지검증업무가 전통적인 관세심사 업무에 더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그 난이도가 더욱 높아진 업무임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정리되어 나타나는 FTA 원산지검증업무의 핵심적인 특징은 전통적인 관세행정(심사)업무에 비해 행정대상이 되는 주요고객이 국내외로 확대되고(가-③),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이 많아지며(나-②, ③), 업무수행에 국제성이 크게 증가하고(다-③, ④), 검증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파급효과가 국가적으로나, 개별 무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는 점(라-②, ③)이다.

2.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

제Ⅱ장 및 제Ⅲ장의 분석내용과 〈표 7〉의 원산지검증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현단계에서 필요한 FTA 원산지검증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산지규정의 단순화를 위한 노력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원산지기준 충족을 어렵게 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원산지 검증의 필요성을 높인다. 그 결과 FTA의 활용도는 낮아지고,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무역업체의 피해는 증가하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 복잡다기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FTA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바지만 (Bhagwati ; 2008, Estevadeordal & Souminen, 2008 등) 우리나라 FTA의 경우도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낮추는 것은 이를 지적하는 빈번한 언론보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²³⁾ 또한 FTA가 증가하면서 〈표 2〉와 같이 원산지검증 업무도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FTA의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체결된 FTA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가능한 것은 향후 체결될 한-중이나 한-일, 한-멕시코, 한-캐나다 등과의 FTA에서 가급적 기존 FTA의 원산지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복잡화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FTA 정책당국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3) 한국경제, '한·미 FTA...수출 中企의 호소 "원산지증명 전문가 지원해줘야"'(2012.6.21. 보도), 매일경제, '中企 수출진흥책 '속빈 강정'(2012.3.27.보도) 등을 참조.

2) 신뢰에 기초한 관세행정 당국간 상호협력

FTA는 본질적으로 협정국가간 무역, 투자 등의 장벽을 완화하여 이의 확대와 발전을 의도하는 것이고²⁴⁾ 어느 FTA에서나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FTA에 의한 특혜의 부여에 일정한 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Heetkamp & Tusveld , 2011) 그러나 원산지에 대한 검증의 강화는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FTA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므로 원산지검증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그 실질을 잘 파악하여 사기 등 위법사항이 분명할 경우 등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고, 원산지검증 및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협정국의 관세행정 당국간 상호신뢰와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 이는 FTA에서 원산지관리가 법률체계, 문화, 상관습, 언어 등 많은 면에서 이질적인 협정당사국 세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행을 감독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협정당사국 관세당국은 상호신뢰라는 원칙 위에 협력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필요시 검증하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결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재판소가 FTA의 원산지와 관련된 판결에서 수차 지적하고 있는 바²⁵⁾이기도 하다. 따라서 FTA 원산지 검증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① 원산지규정 위반 특혜의 엄격한 차단, ② 수출업체의 높은 FTA 활용도 유지, ③ FTA 상대국 관세당국과 우호적 관계유지라는 세 가지 전략목표가 조화롭게 추구되는 것으로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세당국간 협력의 강화와 이익의 조화를 위해 검증을 실시하는 관세당국간 <표 8>과 같이 어느 정도 상호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한-EU FTA 서문 및 제1.1조, 한-미 FTA 제1.2조 및 제1.3조 등을 참조.

25) 유럽연합재판소 판결 No. C-218/83(1984.7.12.) 및 No C-12/92 (1993.12.7.) 등을 참조.

〈표 8〉 FTA 원산지검증에서 상호주의적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구 분 |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
| 직접검증 (참관포함) | ① 검증실시 회수 ② 협정상대국의 수출업체 대비 검증대상 업체의 비율 ③ 수입국의 직접검증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의 협력 및 지원내용 ④ 수입국공무원의 수출국 현장검증 참관시의 협력 및 지원내용 ⑤ 검증결과에 따른 특혜배제 또는 처벌의 정도 ²⁶⁾ |
| 간접검증 | ① 검증요청 건수 ② 협정상대국의 수출업체 대비 검증요청 대상 업체의 비율 ③ 검증결과 통보시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의 종류 및 범위 ④ 검증결과의 회신시기와 방법 ⑤ 검증결과에 따른 특혜배제 또는 처벌의 정도 |

자료 : 관련법령, FTA, 검증업무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

〈표 8〉의 상호주의적 입장을 반영은 관세위원회 등 FTA 협정당사국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과, 관세당국의 자체 업무계획, 업무처리 절차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의 귀책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

원산지의 간접검증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업무의 과중, 쟁송의 발생 등을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각국이 체결하는 FTA가 늘어날수록 검증건수와 대상국가, 대상업체도 늘어나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FTA 관세특례법 및 각 FTA에도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관세 적용배제라는 불이익발생의 근본 원인이 수출국 관세당국 혹은 수출국 자체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입자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호여지가 있다. 예로서 현행 FTA관세특례법의

26) 특혜배제를 해당 수입물품에 한해 적용할 것인지 또는 그 수출자(생산자, 운송인 포함)의 수출(생산, 운송)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배제할 것인지 여부와 일정기간 배제할 경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이 해당된다.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한내에 미회신할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²⁷⁾ 한-EU FTA에도 기한내 미회신이나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는 데²⁸⁾ 이러한 경우의 근본적 귀책은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4) FTA 원산지검증 관련규정의 투명성 제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으로 하는 바²⁹⁾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FTA의 규정들도 명확해야 한다. FTA에 규정된 용어가 불분명할 경우 무역업체 및 관세당국간 뿐 아니라 수출국의 관세당국과 수입국의 관세당국간 마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협정상대국에 이미 선결정례나 판례 등이 존재할 때 다른 협정국에서 이와 어긋나는 처분을 할 경우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FTA의 요건규정들 가운데는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게 표현된 경우 용어들이 있다.³⁰⁾ 또한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무역업체들이 무역과정에서 어떤 증빙자료를 입수하여 제시해야 할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³¹⁾ 따라서 FTA 이행관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이러한 용어나 규정들에 대해서는 협정국과 협의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직접검증 또는 간접검증시 수입국관세당국의 참관에 대해서도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27)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28)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7항.

29) 헌법재판소2002.1.31. 2001헌바13 전원재판부 판결, 1989.7.21. 89헌마 38 전원재판부 판결 등.

30) 한-EU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로서 '상황이 발생하면'의 표현(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제1항)이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표현(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7항)과 같은 것이 그러하다.

31) 한-미 FTA에서는 비당사국의 세관통제 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정되는 공정 이외의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당사국영역 밖을 경유하더라도 원산지 인정하도록 하였다(한-미 FTA 제6.13조)

한-EU FTA에서는 검증참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동의와 그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³²⁾ ‘설정된 조건’ 자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사업장 방문과 관련해 당사국이 합의하더라도만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세부 절차의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 FTA 원산지검증 전문인력의 확보

FTA 원산지검증 업무가 FTA 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간 협조하에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 전개되고, 검증결과에 따른 특혜 배제 등의 처분에는 국내법뿐 아니라 FTA와 협정상대국의 국내법 및 판례 등이 복잡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의 원산지관련 전문인력의 양성도 당연히 필요하나(전준수·조준영, 2012.5. 및 이영수 권순국, 2011.2. 등) 검증이후 국내 및 협정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쟁송과 관련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수출업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이러한 법령에 정통한 ‘FTA 원산지검증 전문 법률팀’의 운영이 필요하다. FTA와 관련된 행정 쟁송체계가 EU 및 미국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고,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므로 수출업체 보호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FTA 원산지검증 전문 법률팀’을 운영할 경우 저비용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원산지검증 전문 법률팀’은 단기적으로는 관세행정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한시적 팀 구성 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수요가 커질 것이므로 관세당국의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전문화된 인재의 채용, 내부인력의 전문화, 협정상대국에 대한 관세공무원의 단기연수와 해외유학, 주재관 파견 등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FTA 대상국별로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민·관 공동의 전문인력 지원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한-EU FTA 세관분야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7조제4항.

V. 결론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그동안 정부나 무역업체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FTA의 체결과 체결된 FTA의 활용문제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FTA의 활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산지검증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표 2>에서 최근 6년간 원산지검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2012년 들어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³³⁾ 원산지검증에서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5년동안 특혜받은 관세의 일괄 추징과 가산세 부과는 물론이고 처벌과 행정제제도 병행된다. 예를 들어 EU 공동 관세법상 FTA 원산지 규정이 위반되었음이 확인되면 특혜관세가 취소되며, 수출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관세법상으로도 원산지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역시 특혜관세의 취소는 물론이고 관세·내국세·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와 관련법령, 그리고 2006년부터 본격화 하여 점차 증가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행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적정한 FTA 이행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와 FTA 관세특례법의 비교분석과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과다한 검증수요 발생한다는 점, 둘째, 협정상대국 관세당국의 귀책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셋째, FTA 검증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상호주의적 검증행정 수행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련되는 법령의 개정, 올바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과 이행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인바 이 연구에서는 당면한 과제의 해결방안으로 FTA 원산지 검증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

33) 조세일보, “FTA '세금폭탄' 떨어진다…원산지검증 요청 200%↑”(2012.7.5.), 뉴시스, “FTA상대국 원산지검증 요청 급증…전년비 200% 증가예상”(2012.7.5.)외 다수 언론보도 참조.

산지규정의 단순화를 위한 노력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무역업체의 입장에서 원산지검증과 이에 따른 대규모 특혜관세의 추징이라는 불상사를 방지하게 위해 FTA의 원산지규정을 숙지하고 평소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고, 특히 수입업체의 경우는 무역계약 체결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와 국내법인 FTA 관세특례법의 상호 비교분석, 그리고 최근 수년간 관세행정기관이 수행한 원산지검증 통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실시하였다. 원산지검증은 FTA 협정국이 공히 실시하는 것이므로 향후 다른 나라의 FTA 원산지검증 사례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협정상대국의 검증상황과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특혜가 배제된 사유를 심층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연구논총」 제10-1집, 2010. 8.
- 김세영·조국형, “FTA 원산지 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2. 5.
- 남풍우,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제3호, 2010. 8.
- 이기웅, “한국의 통관서비스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3권, 2012.2.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 2.
- 전준수·조준영,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제2호, 2012. 5.
- 정순태,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2. 5.
-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2008. 8.
- ,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2011. 5.
- Baldwin, R,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k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29(11), 2006.
- De Melo J. and A. Portugal-Perez,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the ASEAN FTA of EU and US Experience”, Working Paper No. 4016, World Bank, 2006.
- Estevadeordal,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34, 2000.
- Kala Krishna, “Understanding Rules of Origin”, Working Paper 1115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5.
- Plummer, M, “Best Practic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 Application to Asia”, World Economy 30(12), 2007.

ABSTRACT

A Study on FTA-related Administrative Efficiency Measures for Verifying the Origin

Chung, Jae wan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problems related to FTA country of origin of goods verification which is increasing from 2006 and thereby to grope for solution of such problems and seek adequate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It is fou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statistics of last 8 FTAs so far Korea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such as excessive verification processing due to complicated country of origin regulation etc.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licies of country of origin administration ; ① Simplification of FTA country of origin rules ② reciprocal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based on trust ③ rational measurement against corresponding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misbehavior ④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relation to processing rule of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⑤ securing FTA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experts. For these improvements, upcoming FTA shall rule country of origin reasonably, simpl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rule is needed for established FTAs in relation to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with corresponding countries.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FTA preferential tariff law and its related laws, and carry forwar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medium and long term plan.

Key Words : FTA, country of origin(C/O), verification